

●환경부고시제2018-235호

환경부고시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제2018-23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을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36호

환경부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재승인)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의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